# ■ 2022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■

### ◈ 지원내용

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	발급결정일로부터 <b>5년</b>							
	◉ 직종별(참여를 희망하는 훈련과정) 취업률에 따른 자비부담률							
	구 분			종평균 취업			외국어·	국기 등
	· -	70%이상	60~70%	50~60%	40~50%	-	법정직무	특화
	일반훈련생	15%	25%	35%	45%	55%	50%	
자비부담률	국취표(청년·중장년) 국취 I ·표(특정계층)		0	30% %	40%	50% 20%		0%
70102	근로장려금 수급자	7.5%	12.5%	17.5%	22.5%	27.5%	_	
	- 훈련공급이 많은 10개 직종*은 자비부담 +5%p 추가(단, 국취 1유형은 미적용) * NCS소분류 기준: 일반사무, 회계, 의료기술지원(요양보호사), 음식조리, 공예, 식음료서비스, 이·미용서비스, 제과·제빵·떡제조, 문화콘텐츠제작, 임상지원(간호조무사)							
계좌한도	● 유효기간(5년간)내 300만원 훈련비 지원 ※ (국기직종, 과정평가형, 일반고특화) 계좌한도에서 200만원 사용 간주 / (K-디지털 트레이닝) 300만원 사용 간주 └> 2회차 수강 시 계좌잔액을 초과하는 훈련비는 훈련생 개인이 부담 ● 다만, 아래 대상자에 한해 계좌한도 소진 이후 1회에 한하여 100~200만원 추가 지원 ① 비정규직 근로자,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<100만원> ② 연소득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%이하인 자<200만원>							
훈련참여	<ul> <li>● 훈련시간 140시간 미만: 훈련상담 없이 HRD-Net(온라인) 과정검색 후 수강신청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: 대상자확정 문자(카톡) 수신 후 → "HRD-Net 진단·상담 및 수강신청(훈련과정 결정)</li> <li>● 수료했거나 중도 탈락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은 재수강 불가 ※ '법정직무' 및 '외국어 훈련과정'은 고용보험 피보험자(특고, 예술인 제외)만 수강 가능 ※ '원격훈련' 실업자 → 실업자 원격훈련만, 재직자 → 재직자 원격훈련만 수강 가능</li> <li>● 만 75세 이상인 사람은 '계좌발급'및 '훈련참여' 불가</li> <li>- 만 75세 전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만 75세 도래 시 훈련참여 불가</li> </ul>							
훈련장려금 (실업급여수급자 미지급)	● 140시간(훈련시간)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 -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: 출석일수 × 2,500원(월 5만원 한도)  -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: 출석일수 × 5,800원(월 11만6천원 한도)  ※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(특정계층) 참여자는 훈련시간과 관계없이 지급 (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참여자의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은 별도 지급)  ※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자는 훈련장려금 미지급 / 원격훈련 참여시 훈련장려금 미지급  ※ 훈련생 예금계좌에 지급이 원칙이나, 압류로 수령이 곤란한 경우 가족명의 계좌로 지급가능  ● 자비부담 환급 불가(2020.1.1.부터 훈련이 개시되는 과정)							

- △ 주의사항 (훈련과정 수료기준인 훈련출석률 80%이상 반드시 충족·유지)
- 훈련에 참여하는 중, 수강포기(중도탈락)하거나 미수료 시 횟수에 따라 계좌한도 차감
  - \* 본인 질병·사고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는 미차감.(단, 부정출결, 부정발급 시 전액 차감)

<b>1회</b> 미수료 or 수강포기	<b>2회</b> 미수료 or 수강포기	<b>3회</b> 미수료 or 수강포기
계좌한도 20만원 차감	계좌한도 50만원 차감	계좌한도 100만원 차감

- < 상기내용은 내일배움카드관련 안내편의를 위해 제작하였으며 관련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>
- 내일배움카드는 <u>반드시 본인이 소지</u>하여야 하고, 훈련일마다 훈련 시작과 종료 시에 카드 등으로 <u>본인이 직접</u> 출석 체크를 해야하며, 대리출석 체크한 경우 관계자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.

은행 방문	대상자확정 문자(카톡) 수신하고 고용센터방문 또는 HRD-Net에서 확인서 발급(출력) 후,	
(4~7일 소요)	지정은행에서 카드 발급 <카드는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>	
선화신청(우편수령)	개인(신용)정보동의 안내문자 전송하면 동의서 작성 및 카드사 전화 통화 후 배송	
(15~20일 소요)	(농협 1644-4440 / 신한 02-6299-8900, 02-6262-1919) ★ 연락오지 않는 경우 카드사로 연락	
바일신청(우편수령)	카드사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 삽입된 URL을 통해 신청	
기존카드재사용	대상자 확정 문자 받은 날부터 사용 가능	
	(4~7일 소요) 선화신청(우편수령) (15~20일 소요) 바일신청(우편수령)	

## 〈카드발급 신청서 작성〉

- ① 신청서 접수
- ② 대상자 확정 시 문자(카카오톡) 발송

**〈실물 카드 발급 절차〉** ■ 은행방문: 확인서 출력 후 지정 은행 방문

- 은앵망문: 왁인서 술력 우 시성 은앵 망문 ■ 우편(전화신청) : 카드사 통화 후 우편 발송
- 우편(모바일신청) : 카드사 문자의 링크를 눌러 정보 기입 후 우편 발송
- 기존카드 재사용 : 확정 문자 받은 날부터 사용가능

〈수강신청 절차〉

※훈련기관과 상담 후 수강신청 절차 진행

- ■140시간 미만 수업 : HRD-net에서 로그인 후 [수강신청]
- 140시간 이상 수업 : HRD-net에서 로그인 후 [진단상담]

진단상담 완료 후 3일 이내 고용센터에서 전화드립니다.

(유선상담 후 수강신청 승인)

◆ 구직신청 ☞ 워크넷(www.work.go.kr)

확정 후

 $\Rightarrow$ 

◈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훈련과정 탐색 ☞ **직업훈련포털(www.hrd.go.kr)** 



#### ◈ 제출서류

◈ 세울지뉴							
지원대상			제출 서류				
실업자	<b>업자</b> 실업자		고용센터 담당자 확인(고용보험 상실여부 등)				
근로자	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		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+급여이체내역 및 급여명세서+근무지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번호)				
	피보험자인 자영업자		고용센터 확인(고용보험 취득여부 등)				
자영업자		일반	사업자등록증 + 최근 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 <b>필수조건: 사업기간 1년 이상, 연매출 1억 5천 미만)</b>				
		간이	사업자등록증				
1001	일반사업장	면세	사업자등록증+최근 1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( <b>사업기간 1년 이상, 연매출 1억 5천 미만)</b>				
※사업자		휴업	휴업사실증명원				
등록증이		법인	사업자등록증+최근 1년 소득금액증명원( <b>사업기간 1년 이상, 최근 1년간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</b> )				
여러 개인 경우, 매출 합산	부동산임대	일반	사업자등록증+최근 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필수조건: 사업기간 1년 이상, 연소득 4,800만원 미만)				
		간이	사업자등록증				
		면세	사업자등록증				
		휴업	휴업사실증명원				
신용회복지원확정자		확정자	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				
특수형태근로종사자		다	위촉(재직)증명서 + 최근 3개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월별) - 월평균 소득액 300만원 미만				
재학생			고등학생은 마지막 학년일 때 학교장추천서				
			대학생·대학원생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하일 때 재학증명서				

### 

- ▶「공무원연금법」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을 적용받고 재직 중인 사람 또는「군인연금법」제2조 적용받고 재직 중인 사람
- ▶ 만 75세 이상인 사람
- ▶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외국인(H-2, E-9, F-4 등) ※ F-2, F-5, F-6, D-7, D-8, D-9는 고용보험 이력 있는 경우만 발급
- ▶「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」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·융자·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
- ▶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
- ▶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(또는 사업)에 참여하는 사람(사업주훈련 제외)
- ▶ 2020.1.1. 이전에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,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,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
- ▶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(일반수급자)를 수급받는 사람(단,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카드발급 가능)
- ▶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(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)
- ▶「고등교육법」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(휴학생 포함)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(진행 중인 학기포함)을 초과하는 자
- ▶ 사업 기간이 1년 미만(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)인 자영업자(간이과세 제외)
- ▶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인 자영업자·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사업자(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한 금액임)
-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의 대표
- ▶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고유번호증 소지한 비영리단체 대표
- ▶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(소득)이 300만원 이상인 ①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, 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※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직업훈련 참여 시 자비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[최대 6개월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(훈련장려금 별도)] ☞ 문의: 국민취업지원제도팀(센터 2층, 국번없이 1350)

훈련 기관 등록

 $\Rightarrow$